

띄어쓰기의 현황과 과제

임동훈*

I.

한국어의 한글 표기에서 띄어쓰기는 1988년에 고시된 『한글 맞춤법』과 이후에 편찬된 국어사전에 그 근거를 둔다. 띄어쓰기에 대한 기준은 『한글 맞춤법』에 규정으로 정리되어 있고,¹⁾ 『한글 맞춤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나 『한글 맞춤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반영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에 규정된 띄어쓰기의 원리는 총칙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1)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위의 규정은 띄어쓰기의 단위가 단어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조항이나 그 해설에는 어떤 표현이 한 단어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언중이 위의 조항만으로 띄어쓰기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게’가 들어간 말 중에서 ‘만화가게’, ‘고물가게’, ‘쌀가게’는 한 단어이고 ‘웃 가게’나 ‘꽃 가게’, ‘남배 가게’는 한 단어가 아닌데, 제2항으로는 이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것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한글 맞춤법』은 총 57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10개 항(제41항에서 50항 까지)이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이다.

이다.²⁾ 따라서 제2항은 띄어쓰기의 막연한 원칙만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 된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제2항의 원칙을 좀더³⁾ 구체화하여 띄어쓰기에 관한 세부 원칙을 10개의 조항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다. 띄어쓰기에 관한 10개 조항 중에서 제42항, 제45항 두 항은 단어 단위의 띄어쓰기를 다시 확인하는 조항이고, 제41항, 제44항 두 항은 단어 단위의 띄어쓰기에 대한 예외 규정이며, 나머지 항은 단어 단위의 띄어쓰기에 유통성을 부여하는 허용 조항들이다.

(2) 가.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나.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위에서 보듯이 제42항과 제45항은 제2항의 규정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것', '수', '바' 등의 의존 명사나 '내지', '및' 등의 부사가 단어인 한 이들의 띄어 쓰기는 이미 제2항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규정으로서 제42항과 제45항이 발휘하는 기능은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먹을 만큼 먹어라', '청군 대 백군' 등에서 '지', '만큼', '대' 등이 의존 명사에 속하고, '이사장 및 이사들'에서 '및'이 부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이들이 하나의 단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친다.

따라서 위의 규정이 의존 명사에 관한 띄어쓰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2) 이처럼 띄어쓰기가 차이 나는 이유로 띄어 쓰는 '옷 가게, 꽃 가게, 담배 가게'에 비해 붙여 쓰는 '만화가게, 쌀가게'에는 '만화방, 싸전'이라는 합성 명사가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기준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띄어쓰기의 한 기준으로 채택한다면 '과자점, 철물점'이라는 합성 명사가 대응하는 '과자 가게, 철물 가게'도 붙여 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좀 더'처럼 띄어 쓰도록 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좀더'로 붙여 쓴다.

도움이 되려면 '뿐, 만'처럼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면서 의존 명사와 조사로 쓰이는 사례나 '-ㄴ바/바, -ㄴ지/지, -ㄴ데/데'처럼 동일한 형식이 어미의 일부로 쓰이기도 하고 의존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 사례들을 대상으로 그 용법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⁴⁾ 이러한 종류의 표현들은 앞서 언급한 '가게'가 들어간 합성 명사류와 달리 그 띄어쓰기를 국어사전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제41항, 제44항은 제2항에서 규정된 단어 단위의 띄어쓰기에 예외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 규정으로서 의의가 크다.

- (3) 가.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나.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학교 문법에서 조사는 단어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제41항의 규정은 제2항에 예외가 된다. 제44항은 수를 표시하는 말에 대한 띄어쓰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역시 제2항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다.

『한글 맞춤법』에서 띄어쓰기의 대원칙은 '단어 단위'이다. 그러나 띄어쓰기가 독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의미가 미약한 허사(虛辭)는 비록 단어라 할지라도 실사(實辭)에 붙여 써서 문장의 중심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실사가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41항의 규정은 띄어쓰기에 '단어 단위' 외에 '실사 위주'라는 또 하나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ㄴ바, -ㄴ지, -ㄴ데'에서 'ㄴ'은 기원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에서 왔지만 공시적으로는 어미의 일부이어서 그 앞에 시제나 양태를 표시하는 선어말 어미 '-었', '-겠'이 자유로이 올 수 있다. 반면에 의존 명사 '바, 지, 데' 앞에 오는 'ㄴ'은 공시적으로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선어말 어미 '-었', '-겠'이 올 수 없다. '-었', '-겠'은 18, 19 세기에 형성된 문법 형태소이다. 그런데 내포절인 관형사절의 시제나 양태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어 '-었', '-겠'이 형성되기 이전의 문법을 보여 준다(다만 '었던'은 가능하다).

- (i) 벌써 집에 돌아왔는바 이젠 걱정이 없다.
- (ii) *먹었는 밥 / 먹은 밥

현행 『한글 맞춤법』은 띄어쓰기에서 허용 규정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띄어쓰기에 관한 세부 조항 10개 중에서 6개가 허용 조항이거나 허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가.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씀이 원칙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나.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위는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보조 용언에 대한 띄어쓰기 규정이다. 1933년에 제정된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는 명수사(즉 수량 단위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1988년의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들을 띄어 쓰도록 하되, 일부 허용 조항을 덧붙였다.

제43항은 단위 명사가 한글 표기가 아닌 숫자와 어울리어 쓰일 때에는 서로 문자가 달라 띄어 쓰는 효과가 있으므로 붙여 씀을 허용한 것이고, 단위 명사가 순서를 나타낼 때에는 흔히 붙여 써 왔던 관용을 존중하여 붙여 씀을 허용한 것이다. 제43항에서 언급한 순서에는 '일학년, 십칠번'처럼 차례를 나타내거나 '두시 삼십분', '오월 오일'과 같이 시각, 연월일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 포함된다.

제47항에서 규정된 띄어쓰기는 보조 용언이 비록 단어이기는 하나 선행하는 본용언과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형성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또 이 규정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아/-어'로 연결될 적에 이 구성을 합성 동사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서 일부 붙여 씀을 허용한 것은 후술할 제46항, 제49항, 제50항의 허용 조항과 성격이 다르다. 『한글 맞춤법』의 여러 규정이 '단어 단위의 띄어쓰기'라는 대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제43항, 제47항의 규정은 띄어쓰기의 원칙으로 '단어 단위의 띄어쓰기' 외에 '실사 위주의 띄어쓰기'가 더 있음을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띄어쓰기가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 기능이 있다면 의미가 미약한 허사를 실사에 붙여 실사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이 점에서 실사와 허사의 중간적 지위를 가지는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에 대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을 허용한 현행 규정은 '단어 단위'와 '실사 위주'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적절히 배합한 것으로 판단된다.⁵⁾

다만 제43항과 제47항은 규정의 관점에서 여러모로 염밀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제43항의 경우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닌 '어학실습실'이 들어간 '제1어학실습실'이 예로 올라 있다는 문제가 있고, 제47항은 '경우에 따라'라는 부분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어지다' 구성에 대한 예외적 띄어쓰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 예에서는 '하다'가 마치 보조 용언인 듯 이 다루어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다'는 제47항의 해설에서 보조 용언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제47항의 규정과 달리 항상 본용언에 붙여 쓴다.⁶⁾ 따라서 제47항에는 '다면' 조항을 두어 '지다'가 항상 본용언에 붙어야 됨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47항에 제시된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아/-어'로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으로 국한되어 있는데,⁷⁾ 이 역시 제47항의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을 구체화해 이러한 제한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⁸⁾ 물론 이 경우는 '경우에 따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만약 이렇게 수정이 되면 모든 보조 용언을 앞 말에 붙여 쓸 수 있게 되어 규정이 훨씬 간소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5)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도 남한과 비슷한 점이 있다. 다만 북한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띄어 쓰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정했다는 점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다. 1987년 5월 15일 국어사정위원회에서 만든 『조선말규범집』에는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단어에 붙여쓰며 일부 경우에 띄여쓰는것으로 조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6) 제47항의 해설에는 '이루어진다, 써진다, 예뻐진다'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7) 붙여 씀을 허용하는 보조 용언에 의존 명사와 '하다, 싶다'가 붙어 형성된 보조 용언이 포함된 것은 관형사형 어미가 용언을 꾸미는 문법적 패턴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8) '행복해하다, 즐거워하다'에 쓰인 '하다'도 항상 선행 용언에 붙여 쓰고 또 선행 용언에 붙어 전체 용언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이 있으므로 '지다'와 함께 '다면' 조항에 넣을 필요가 있다.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허용 조항은 제46항, 제49항, 제50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 (5) 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 나.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 다.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제46항은 1음절 단어가 연이어 나타나면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붙여 쓸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는 띄어쓰기가 문법적 차원 외에 시각적 차원도 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규정과 예와 이에 대한 해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즉 둘 이상) 나타나면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규정의 예에는 '이집 저집, 좀더 큰것'과 같이 단음절어 넷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만 제시되어 있고 해설에는 '한잔 술'과 같이 단음절어가 셋 나타난 경우까지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이 규정은 '연이어'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규정으로서 제 구실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취지가 '새 집'을 '새집'으로 쓴다든지 '한잔 술'을 '한잔술'로 쓰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규정의 '연이어'는 '셋 이상 연이어'로, '붙여 쓸 수 있다'는 '의미상의 딩어리별로 붙여 쓸 수 있다'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9항은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이 특정의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지어 가리킬 때에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을 규정한 내용이다. 그래서 '대한 중학교'와 같은 고유 명사는 '대한중학교'와 같이 붙여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고유 명사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문 규정의 예로 제시된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이나 해설의 예로 제시된 '서울 대공원 관리 사업소 관리부 동물 관리과'는 고유 명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49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6) 가. 고유 명사는 붙여 쓸 수 있다.
 나. 기구나 조직의 명칭을 나타내는 말은 그 구성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제49항을 (6)과 같이 나누면 '동덕 여자 대학교'를 '동덕여자대학교'로 붙여 쓰는 것은 (6가)에 의해, '동덕 여자 대학교 인문 대학 국어 국문학과'를 '동덕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로 붙여 쓰는 것은 (6나)에 의해 보장 된다.

그러나 제49항을 (6)과 같이 수정하더라도 일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예컨대 고유 명사(정확히는 고유 명칭)에 속하는 책명이나 회사명 등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의 띄어쓰기가 분명히 규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7) 가. 사랑의 학교, 왕자와 거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나. 문학과 지성사,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50항은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 규정이다. 전문 용어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뜻이 있어 해당 분야에서는 마치 한 단어처럼 사용됨이 일반적 인데, 제50항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도 전문 용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조사나 어미가 들어간 형식의 띄어쓰기가 분명히 규정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 (8) 가. 청소년 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나. 두 팔 들이 가슴 벌리기, 무릎 대어 돌리기
 나'.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 바닷말과 물고기 기르기

(8가)는 법률명이다. 그런데 제50항만으로는 법률명이 전문 용어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하다. (8가')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것인데, 제50 항을 적용하여 '조수 보호'와 '폭력 행위'에 붙여 쓸 수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범률명을 전문 용어의 하나로 해석한 것이다.

(8나, 8나')은 『한글 맞춤법 해설』에 제시된 전문 용어들인데, 모두 조사나 어미가 들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설에 따르면 (8나)는 붙여 쓸 수 있고 (8나')은 붙여 쓸 수 없다. 해설에서는 (8나')을 붙여 쓸 수 없는 이유를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8가')에서 보듯이 하나의 전문 용어 안에서도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붙여 쓸 수 없도록 하고 그러지 않는 부분은 붙여 쓸 수 있게 했다.⁹⁾

그러나 (8나)와 (8나')의 차이는 이처럼 띄어쓰기의 차이를 불러올 만큼 커 보이지 않는다. (8나) 역시 어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 (8나, 8나')에 적용된 기준을 (7)에 적용하면 ‘사랑의 학교,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붙여 쓸 수 있고 ‘왕자와 거지, 문학과 지성사,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붙여 쓸 수 없게 되어 비슷한 성격의 말들이 달리 취급된다는 문제가 있다.¹⁰⁾

II.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은 『한글 맞춤법』 외에 『외래어 표기법』에도 나와 있다.

- (9) 가.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9) 그렇지만 ‘조수 보호’와 ‘폭력 행위’를 붙여 쓸 수 있게 한다면 (8나')에서 ‘쓸모 있는’도 붙여 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명사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된 관형어의 수식을 받거나 두 개 이상의 체언이 접속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10) 이 점에서 제49항과 제50항에 해당되는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가 조사나 어미를 포함할 때에는 일률적으로 붙여 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나.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

(예) 카리브 해, 북해, 밸리 섬, 목요섬

(9가)는 『외래어 표기법』 제3장 제1절 제10항, 즉 영어에서 온 복합어¹¹⁾ 표기에 나와 있는 띄어쓰기 규정이다. 예컨대 영어의 top class에서 온 말은 복합어일지라도 영어의 띄어쓰기대로 '톱 클래스'처럼 띄어 쓰되 '톱클래스'처럼 붙여 쓸 수도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아무리 외래어라 할지라도 한국어의 띄어쓰기를 외국어의 띄어쓰기에 따르게 했다는 점에서 아주 불합리한 규정이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붙여 쓴 '톱클래스'를 표제어로 잡아 위의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교과서나 잡지 등에서는 '커피숍, 아이스크림'처럼 영어에서는 띄어 쓰나 한글 표기에서 붙여 쓴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한다.

(9나)는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1항의 규정이다.¹²⁾ 이 규정은 외국의 인명, 지명을 표기할 때 1음절로 된 '해', '섬', '강', '산' 등이 그 뒤에 붙으면 이들이 외래어의 일부로 오해될 것을 염려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문제는 '섬, 강, 산'과 달리 '해(海)'가 단어가 아니어서 이 규정이 『한글 맞춤법』 제2항에 어긋난다는 점이고, 둘째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의 본문에 '이탈리아 어, 에스파냐 어, 프랑스 어'로 표기되어 (9나)의 규정이 인명, 지명이 아닌 경우에도 근거 없이 확대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번 째의 문제는 '어(語)'가 인명, 지명이 아닐뿐더러 단어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또 '어'를 이처럼 띄어 쓰면 '에스파냐 어과, 에스파냐 어과장'과 같은 표기를 인정하게 되어 외래어의 띄어쓰기가 고유어나 한자어의 띄어쓰기와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도 있다.¹³⁾

11) 여기서의 '복합어'는 학교 문법의 '합성어'에 해당된다. '한글 맞춤법' 30항과 '표준어 규정' 29항에서는 '합성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

12) 이 규정에서의 '우리말'은 '고유어나 한자어'로 고쳐야 옳을 것이다.

1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語), 인(人), 족(族)'이 외래어 뒤에 올 때 띄어 쓰도

III.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띄어쓰기는 '단어 단위'와 '실사 위주'라는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어 단위'는 무엇이 단어인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원리로서의 효과가 크지 못하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의 해설에서는 단어인지 접사나 어근인지의 구별이 쉽지 않은 '각(各), 동(同), 전(全), 전(前), 중(中), 간(間)' 등의 1음절 한자어에 대해 그 띄어쓰기를 예로 밝히고, '고속도로, 변산반도, 안전사고'와 같이 명사가 조사 없이 연결되어 합성 명사인지, 명사구인지의 구별이 쉽지 않은 예들에 대해서도 그 띄어쓰기를 사례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10) 가. 대북한 전략, 반정부 운동, 통계상의 수치, 각 학교, 제 관계자 출입 금지, 본 대학에서는, 범위 내, 고려 말, 가족 간의 우애, 이러한 원칙 하에¹⁴⁾
- 나. 고등학교, 전라북도, 태백산맥, 솔선수범, 시행착오, 강장동물, 조선호박, 염화나트륨, 석회질소, 옥수수기름, 김치찌개, 갑오개혁, 임진왜란, 난중 일기

(10가)에 제시된 예들은 띄어쓰기에서 혼란을 보이는 1음절 한자어들이다. 여기서 '대(對), 반(反)'은 명사 앞에 붙여 그 전체를 관형어로 만드는 접두사이고 '상(上)'은 접미사이며, '각(各), 제(諸), 본(本)'은 관형사, '내(內), 말(末), 간(間)'은 의존 명사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 접두사, 의존 명사에 걸쳐 쓰이기도 하므로 각각의 용법들을 잘 밝혀 줄 필요가 있다.¹⁵⁾

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띄어쓰기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불합리한 처리이다.

14)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때의 '하'를 접미사로 보았는데, 이때의 '하'는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 의존 명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5) '간(間)'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척간이다'에서의 '간'은 붙여 쓰고 '인척 간의 다툼이 있어선 안 된다'에서의 '간'은 띄어 쓴다. 전자는 접미사이고(이 경우는 어근으로

(10나)의 예들은 그간 띄어쓰기에서 혼란을 보여 온 명사와 명사의 결합형이다. 이들은 도명, 산맥명, 한자성어, 동식물의 분류학상의 단위, 품종명, 화학 물질의 이름, 음식명, 음식 재료명, 역사적 사전명 등인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모두 붙여 쓰고 있다.

그리고 접사가 붙은 파생어의 경우는 아주 생산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느냐의 여부가 띄어쓰기의 기준이 되므로 관련 표제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붙여 써야 할 말이 국어사전의 표제어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가장 최근에 나온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접미사 ‘간(間)’이 붙은 표제어 중에 그간 국어사전들에서 붙여 써 왔던 ‘상호간’이 빠져 있어 ‘상호간’의 띄어쓰기가 갑자기 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요컨대 『한글 맞춤법』에서는 엄밀성과 충분성이 결여된 규정을 보완하고 그 해설에서는 추상적 원칙으로 제시된 ‘단어 단위’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를 보완할 설명과 사례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과 『한글 맞춤법 해설』로 충분치 않은 것들은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그 띄어쓰기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국어사전의 표제어를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규정과 해설, 그리고 국어사전이 삼위일체를 이룬 후에야 띄어쓰기로 인한 문자 생활의 혼란이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⁶⁾

볼 수도 있다) 후자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이다. 전자에서의 ‘인척’과 달리 후자에 서의 ‘인척’은 그 뒤에 ‘들이’를 붙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16) 예컨대 접사 ‘하다’의 경어형으로 쓰이는 ‘드리다’나 ‘하다’로 끝나는 동사에 짹이 되어 그 과동형과 사동형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 ‘�다’, ‘당하다’, ‘시키다’는 그간 띄어쓰기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를 붙여 쓰기로 한다면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 언급이 될뿐더러 국어사전에서도 표제어로 등재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이들을 사전 표제어로 충실히 등재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처리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IV.

그런데 띄어쓰기는 한글 표기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띄어쓰기가 문제가 되는 건 문장 부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1) 가. 1919. 3. 1.

가'. 5, 6 세기

나. 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

나'. 오전 10:20

(11가)는 온점 규정의 (2)항에서 제시한 예이고, (11가')은 반점 규정의 (14)항에서 제시한 예인데, 모두 그 띄어쓰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제시된 예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띄어쓰기의 여부를 알아차릴 수는 있으나, 이처럼 띄어쓰기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언중의 문자 생활에 적잖은 혼란을 초래한다. 실제로 (11가, 가')과 같은 경우에 온점과 반점 뒤에서 붙여 쓰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1나, 나')은 쌍점 규정의 (1)항과 (4)항에서 제시한 예이다. 쌍점 역시 띄어쓰기 규정이 없어 사람들이 큰 혼란을 보이는 부분이다. 위 규정에 제시된 예를 보면 (11나)와 같이 내포되는 종류를 들 때나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을 달 때에는 앞말과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쓰며, (11나')과 같이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에는 앞뒤의 말을 모두 붙여 쓰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탓인지 쌍점의 띄어쓰기에서 적잖은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¹⁷⁾

문장 부호 규정에 띄어쓰기 규정이 없어 문자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벗금과 줄표, 물결표도 마찬가지다.

17) 이런 점을 반영해서인지 몰라도 1996년에 국어정보학회에서 문화체육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는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에도 쌍점을 앞말과 붙여 쓰고 뒷말과 띄어 썼다.

(12) 가. 착한 사람/악한 사람

- 나. 그 신동은 네 살에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벌써 시를 지었다.
 다. 9 월 15 일 ~ 9 월 25 일

(12가)는 빗금 규정에 제시된 예이고 (12나)는 줄표 규정에 제시된 예이며 (12다)는 물결표 규정에 제시된 예인데, 이 모두 그 띄어쓰기가 크게 혼란을 보인다. (12가)에서 빗금은 대립되는 표현 사이에 쓰여 앞뒤의 말과 붙어 있으나, 실제의 문자 생활에서는 빗금이 항상 앞뒤의 말과 붙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詩)에서 행을 구분 표시하고자 할 때 쓰이는 빗금은 앞뒤의 말과 모두 띄어 쓰는 쪽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빗금의 각 용법에 따라 그 띄어쓰기를 분명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12나)의 줄표나 (12다)의 물결표 역시 앞뒤의 말과 띄어 쓸 것인지, 붙여 쓸 것인지를 불분명하여 언중이 문장 부호를 쓸 때 불편을 느끼는 사례들이다.¹⁸⁾ 이 경우도 그 띄어쓰기를 명문화해 두어야 언중이 문자 생활에서 느끼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V.

띄어쓰기는 북한 규정과 남한 규정의 차이가 심하지 않다. 크게 보아 북한은 남한에 비해 붙여 쓰는 경향이 강한 편이나 북한의 규정 역시 단어를 단위로 하여 띄어 쓴다는 대원칙은 지키고 있다. 북한은 1966년에 폐낸 『조선말규범집』에서 일정한 뜻덩이를 나타내면 여러 단어로 구성된 말일지라도 붙여 쓰도록 하여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는 띄어쓰기의 원칙을 혼든 바 있으나, 1987년에 개정한 『조선말규범집』에서는 띄어 쓰는 사례를 확대 규정

18) 앞서 언급한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는 줄표(이 보고서에서는 이름표)의 띄어쓰기를 현행 규정과 달리 앞뒤의 말에 붙여 쓰도록 한 바 있다(이 역시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예를 통해 그 띄어쓰기를 보이고 있다).

하여 이전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¹⁹⁾ 반대로 남한은 그간 지나치게 띄어 쓴다는 여론을 의식하여 1988년에 개정된 『한글 맞춤법』에서 붙여 쓰는 허용 조항을 많이 마련하였다. 그 결과 남한과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은 그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세부적인 데서는 북한의 띄어쓰기가 남한의 띄어쓰기에 비해 붙여 쓰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북한이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는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 조항을 남한보다 많이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한과 다른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을 간략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⁰⁾

- (13) 가. 제3항. 불완전명사와 이에 준하는 단위들은 원칙적으로 앞단어에 붙여쓰며 일부 경우에 띄어쓰는것으로 조절한다. (예) 좋은것, 나의것, 같것
- 나. 제7항. 수사가 토없이 {중략} 단위명사(또는 이에 준하는 명사)와 어울린 것은 붙여쓰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50명, 여섯켤레, 여덟병
- 다. 제10항 2) (2) 『아, 어, 여』형의 동사나 형용사에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직접 어울린것은 붙여쓴다. (예) 물아내다, 배껴주다, 짚어지다, 들어보다, 두려워하다
- 다'. 제10항 2) (3) 『아, 어, 여』형이 아닌 다른 형 뒤에서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는 붙여쓴다. (예) 읽고있다, 보고나니, 물어보자마자, 읽는가보다²¹⁾

(13)은 의존 명사(북한의 용어로는 불완전명사)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이다.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에 대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3가), (13나)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 띄어쓰기 규정은 2000년에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조선말 띄여쓰기 규범』(동경: 학우서방)을 펴면서 다소 개정되었다. 그러나 학술용어를 붙여 쓰는 쪽으로 통일 했다든지 '형, 식, 성, 적, 용, 급'이 붙는 단위를 뒤에 오는 단어와 붙여 쓰도록 했다든지 등의 몇몇 사항을 제외하면 1987년 규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곳에서는 1987년 규범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20) 남한에서는 띄어쓰기가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지만 북한에서는 띄어쓰기가 별도 규정으로 되어 있다. 『조선말규범집』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법, 문화어 발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13)에서 보인 예는 필자가 해당 규정에서 일부만 추린 것이다.

보조 용언도 남한에서는 띄어 씀이 원칙이나 북한은 (13다, 다')에서 보듯이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지'로 연결된 '그렇지 않다, 이기지 못하다' 유형을 남한과 같이 띄어 쓰도록 하고 남한에서도 (13다)와 같은 경우에 붙여 씀을 협용하여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크지 않게 되었다.

- (14) 가. 제5항 2) 수사를 우리 글자로만 적거나 아라비아수자에 『백, 천, 만, 억, 조』 등의 단위를 우리 글자와 섞어 적을 때에는 그것을 단위로 하여 띄여쓴다. (예) 구십삼억 칠천 이백 오십팔만 육천 삼백 육십오
- 나. 제2항. 명사들이 토없이 직접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데인 단위로 띄여쓴다. (예) 지난해 늦가을 어느날 이른새벽에, 사회주의건설, 국어교원
- 나'. 제2항 3) 고유한 명칭의 앞뒤에 보통명사적인것이 어울린 경우 (3) 칭호, 직명 등이 뒤에 올적에는 그것을 앞에 붙인다. (예) 김철수동지, 육희아주머니, 성희누나, 김춘식박사
- 다. 제21항. 학술용어, 전문용어의 띄여쓰기는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품사소속과 형태에는 관계없이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먼바다, 평의밥풀, 끝소리법칙, 세마치장단²²⁾

(14)는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 외의 부분에서 남한과 다른 북한의 띄어쓰기 규정을 간략히 보인 것이다. (14가)는 수를 적을 때에 만(萬) 단위로 띄어쓰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십진법에 따라 띄어 씀을 보여 주고, (14나, 14나')은 둘 이상의 명사가 연이어 올 때 북한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으로 묶어지는 데인' 단위로 띄어 씀을 보여 준다. 그리고 (14다)는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이라는 띄어쓰기 기준이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보여 준다.

그러나 (14)에 전반적으로 적용된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이란 띄어쓰기의 기준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어문 규정의 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이를 적용하는 언증이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에 대해

22) (14)에 제시된 예도 필자가 해당 규정에서 간추린 것이다. 그리고 (14나)의 예는 제2항의 '1) 일반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 보인 여러 예들에서 하나씩 뽑은 것이다.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띄어쓰기가 통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단어 단위'를 주로 하고 '실사 위주'를 종으로 하는 남한의 띄어쓰기에 비해 '단어 단위'를 주로 하고 '하나의 대상, 하나의 개념'을 종으로 하는 북한의 띄어쓰기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규정의 엄밀성 면에서 꽤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고영근 편. 2000. 『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 역락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 2001. 『한국 어문 규정집』. 국립국어연구원.
- 국어정보학회. 1996. 『간행물 양식과 문장 부호 실태 조사 및 표준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부 연구보고서.
- 이익섭, 2002. 띄어쓰기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생활』 12.1.
- 임동훈. 2002. 서평: 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과 조선어 연구 1, 2, 3. 『고영근의 국어학 세계』. 삼경문화사.
- 한글학회. 1989.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